



공동재보험 주요내용과 적용사례

노건엽 연구위원, 김석영 선임연구위원

- 제도 및 경제환경 변화로 보험회사 자본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공동재보험 도입 방안이 논의되고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음
 - 공동재보험(Coinsurance)이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, 저축보험료 등 영업보험료 전체를 재보험사에 출재하여 보험위험뿐만 아니라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게 이전하는 재보험을 의미함
 - 공동재보험은 자산과 부채 모두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채만 이전하는 변형된 유형도 존재하며,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유형이 모두 허용됨
 - 국내 감독규정에서 허용되는 공동재보험 방식은 출재비율에 따라 위험이 이전되는 비례재보험으로 한정되며, 금리위험 전가효과가 지급여력제도에 반영됨
- 국내 보험회사가 금리위험을 전가하는 공동재보험 계약 체결을 시도한 바 있고, 해외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 부담을 감소시키거나 금리확정형 연금보험, 변액보험 등의 시장위험 전가에 활용함
 - 국내 한 보험회사는 금리확정형 생사혼합보험의 요구자본 감소를 위해 비례재보험 방식의 공동재보험 계약 체결을 시도한 바 있음
 - 해외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을 감소시키거나 금리확정형 연금보험의 금리 위험, 변액보험의 최저보증 위험 등 다양한 상품의 시장위험 전가에 공동재보험을 활용함
 -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원보험사는 출재한 보험부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하며, 재보험사는 원보험사보다 높은 자산운영 성과가 가능하고 요구자본 부담도 낮다고 판단하여 공동재보험을 인수함
- 공동재보험 도입은 자본관리수단 확대에 의의가 있으나 다른 방식의 부채조정방안 도입 검토도 필요하고,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재보험 시장활성화와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할 것임
 - 공동재보험 도입은 직접적인 자본관리에서 부채조정방식으로 자본관리수단이 확대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계약이전, 계약재매입 등 다른 방식의 부채조정방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 - 공동재보험은 비례재보험 방식만 허용되었으나 향후에는 비비례재보험과 같은 다양한 방식이 허용될 필요가 있으며, 추가적인 제도 개선으로 공동재보험 시장을 활성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할 것임

1. 검토 배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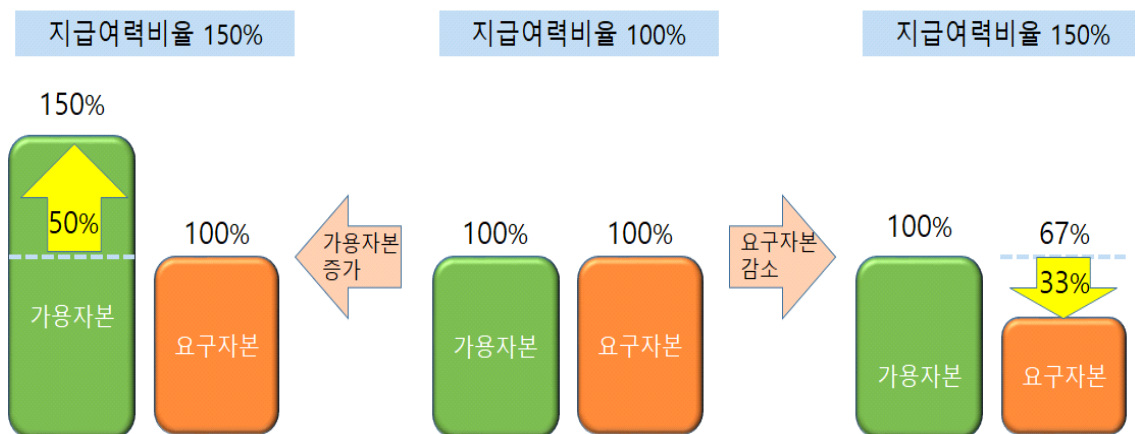
■ 새로운 제도(IFRS17, K-ICS)와 저금리 지속 상황이 맞물려 보험회사 자본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부채조정을 통한 자본관리방안 중 공동재보험 도입 방안이 논의¹⁾되고 최근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음

- 기존 자본확충방안은 유상증자, 신종자본증권, 후순위채 등 직접적인 자본 증가 방안이며, 부채조정을 통한 자본관리방안²⁾으로 공동재보험, 계약재매입, 계약이전 등이 있음
- 감독당국은 감독규정에서 공동재보험의 정의와 공동재보험 계약형태 등을 제시하고 시행세칙은 보험위험 전가 평가기준, 부채적정성 평가, RBC 위험액, 신고서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

■ 보험회사는 공동재보험 활용에 따른 요구자본 감소로 지급여력비율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임

- 기존 자본확충방안은 가용자본을 증가시켜 지급여력비율을 개선하는 방식인 반면, 공동재보험은 요구자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낮춤
-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이 동일한 경우, 가용자본 증가보다 요구자본 감소하는 방안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임(〈그림 1〉 참조)

〈그림 1〉 지급여력비율(가용자본/요구자본) 효과 비교



■ 본고에서는 공동재보험 주요내용 및 해외사례를 설명하고 이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

1)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보도자료(2020. 1. 30), “공동재보험 도입방안”

2) 노건엽(2020), 「보험부채 구조조정을 활용한 자본관리」, 『CEO Brief』, 보험연구원

2. 공동재보험 주요내용



■ 공동재보험(Coinsurance)이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, 저축보험료 등 영업보험료 전체를 재보험사에 출재하여 보험위험뿐만 아니라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게 이전하는 재보험을 의미함(그림 2) 참조

- 전통적인 재보험은 위험보험료만을 재보험사에 출재하여 보험위험만 이전되며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계약(YRT: Yearly Renewable Term)이 일반적임
 - 현재 국내 재보험의 일반적인 형태로 RBC 보험위험액에서 최대 50%만 위험전가 효과가 인정됨
- 공동재보험은 보험위험뿐만 아니라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출재가능하며, 1년 이상 장기로 계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
 - 공동재보험은 재보험 출재방법의 하나이지만 그 특성으로 인해 금융재보험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, 이번 제도개선에서는 공동재보험을 금융재보험³⁾의 한 형태로 지칭함

〈그림 2〉 전통적 재보험과 공동재보험 비교



■ 공동재보험은 자산과 부채 모두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채만 이전하는 변형된 유형도 존재하며,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유형이 모두 허용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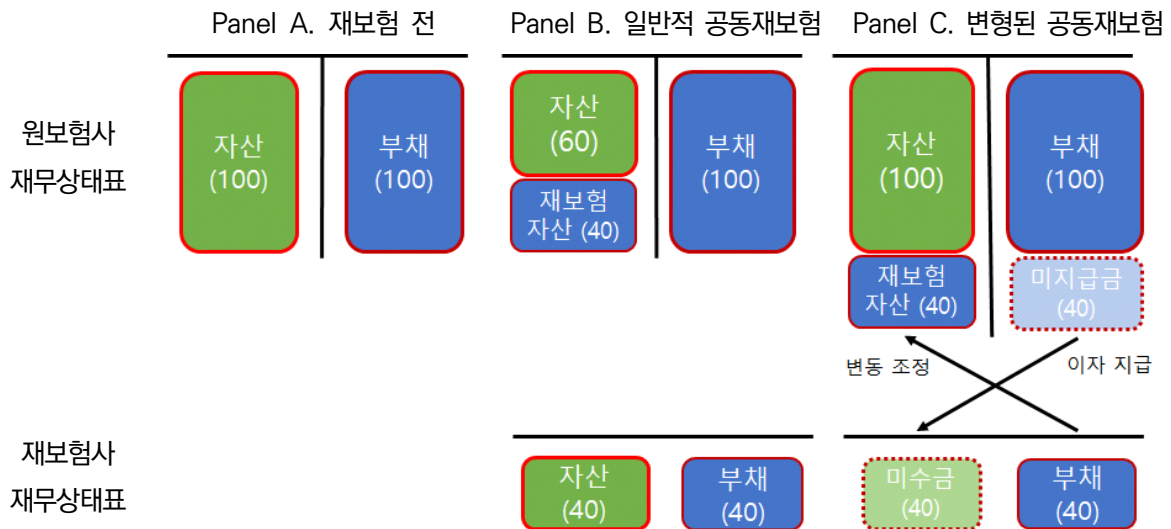
- 일반적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보유한 운용자산과 책임준비금(부채)을 모두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임
 - 계약형태를 이해하기 쉽고 재보험사 자산운용능력을 활용할 수 있으나, 재보험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이 존재하고 원보험사가 재보험사 투자를 통제할 수 없어 계약자 배당 등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음
- 변형된 공동재보험(Modified Coinsurance)⁴⁾은 원보험사가 보유한 책임준비금만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임

3) 위험보험료를 출재하여 보험리스크를 이전하는 전통적 재보험을 제외한 모든 재보험을 금융재보험이라고 함

4) 유럽식 공동재보험(European coinsurance) 또는 자산예탁 공동재보험(coinsurance with funds withheld)을 말하며 자산, 부채 이전이 없는 미국식 변형된 공동재보험(American Modified Coinsurance)을 설명하는 것은 아님

- 재보험 거래로 인한 거래상대방 위험이 감소되며 원보험사가 직접 자산을 운용하므로 투자 의사결정에 제약이 없으나, 계약형태가 복잡해질 수 있음
- 원보험사가 재보험사에게 40%를 출재하는 경우, 일반적 공동재보험은 자산과 부채의 40%가 재보험사에게 이전되며 변형된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는 미지급금으로 표시하고 이자를 지급함(〈그림 3〉 참조)

〈그림 3〉 일반적 공동재보험과 변형된 공동재보험 비교(출재율 40%인 경우)



■ 국내 감독규정에서 허용되는 공동재보험 방식은 출재비율에 따라 위험이 이전되는 비례재보험으로 한정되며, 금리위험 전가효과가 지급여력제도⁵⁾에 반영됨

- 허용되는 공동재보험 유형은 보험상품에 내재된 모든 위험이 출재비율에 따라 재보험사에 이전되는 ‘비례 재보험계약’으로 한정되며 비비례방식은 허용되지 않음
- 공동재보험 계약으로 발생하는 책임준비금 장부가액과 시가평가액의 차액은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으로 계상하여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함
 - 시가평가액이 책임준비금보다 큰 경우 원보험사는 선급비용으로 자산, 재보험사는 선수수익이 되어 부채로 계상하고 반대의 경우는 원보험사는 선수수익(부채), 재보험사가 선급비용(자산)으로 처리함
- RBC 금리위험액의 금리위험 평가대상 계약에 공동재보험 계약이 포함되어 금리위험에 대한 전가효과가 지급여력제도에 반영되고,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는 선급비용은 신용위험을 반영함
 - 다만, 공동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미지급금이 보험부채 익스포저에 포함되므로 금리민감도 기준 적용에 의해 금리위험 전가효과가 감소될 수 있음

5)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[별표 22](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)

- 한편, 부채적정성평가(LAT) 시에는 공동재보험 계약과 보험 계약을 구분하여 평가하고, 각각의 잉여·부족분은 상계할 수 없으며 보험위험 평가기준이 보완되고 별도 약정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함
- 공동재보험 계약 내 평가단위(금리확정/금리연동, 유/무배당, 변액보험) 간에는 잉여·부족분이 상계가 가능하나, 공동재보험 계약과 보험 계약과는 상계가 불가능함
 - 또한 복수의 회사와 체결한 공동재보험 계약 간에도 상계할 수 없음
-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에 '별도의 약정을 통해 재보험사에게 재보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일정수준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재보험계약' 항목을 신설하여 보험위험 전가 평가기준을 보완함
- 계약신고서에 계약서 사본뿐만 아니라 별도의 약정이 없음을 확인하는 재보험사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확인서 제출의무를 명시⁶⁾함
 - 평가기준을 보완한 것은 미국보험감독관협의회(NAIC)의 재보험에 대한 요구사항⁷⁾을 참고한 것임

3. 국내외 적용 사례



- 국내의 한 보험회사는 금리확정형 생사혼합보험의 요구자본 감소를 위해 비례재보험 방식의 공동재보험 계약 체결을 시도한 바 있음
- 원보험사는 확정금리 6.5%인 생사혼합보험에 대해 출재율 70%의 비례재보험식 공동재보험을 출재함 (<그림 4> 참조)
 - 계약시점에 시가로 평가한 부채금액과 현행 책임준비금의 차액을 재보험사에 초기 지급금으로 지급함
 - 계약 이후 원보험사는 재보험사에게 계약자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보험사는 원보험사에게 보험급부(해약환급금, 만기환급금 등)와 재보험수수료 등을 지급하여 분기별로 정산함
- 이와 같은 계약을 통해 원보험사는 금리위험 등을 포함한 요구자본 감소 효과를 기대하였음⁸⁾

6)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[별지 35](재보험계약 신고서)

7) 조재린·김해식(2013), 「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와 시행과제」, 봄호, 『보험동향』

8) 계약 출재 후 감독당국에 신고하였으나, 당시 제도 미비로 인해 신고처리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

〈그림 4〉 공동재보험 현금흐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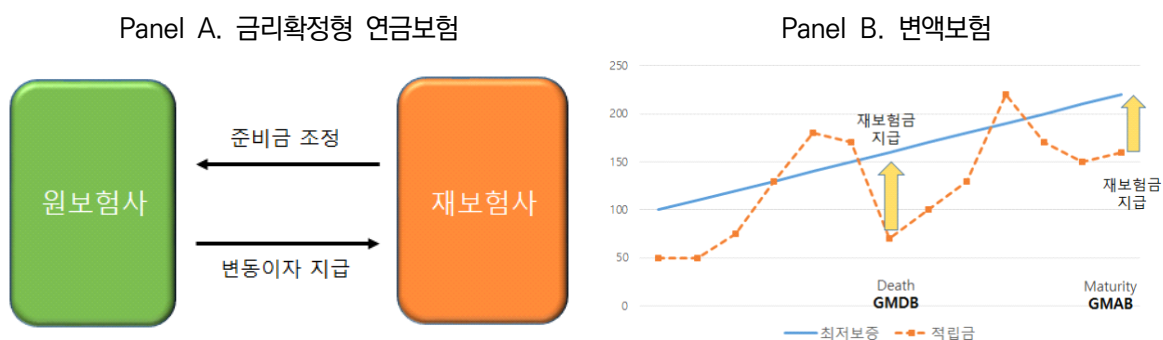
■ 해외의 경우 과도하게 적립된 책임준비금을 유동화하려는 목적으로 위험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함께 출재하는 공동재보험 거래⁹⁾를 활용하여, 책임준비금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 수익성을 개선함

- 원보험사는 위험보험료와 표준책임준비금을 함께 출재하면서 표준책임준비금은 20% 할인하여 출재함
- 재보험사는 표준책임준비금이 보수적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표준책임준비금 80%로 미래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수재함
- 금융당국은 재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원보험사보다 높기 때문에, 미래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보험 거래를 허용함

■ 또한 해외 보험회사들은 금리확정형 연금보험의 금리 위험,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위험 등 다양한 상품의 시장위험 전가에 공동재보험을 활용함(그림 5) 참조

- 금리확정형 연금보험은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준비금을 조정하고, 원보험사는 변동이자를 재보험사에 지급하여 금리위험을 전가할 수 있음
- 변액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보증(GMDB), 최저적립금보증(GMAB)에 대한 리스크를 재보험사에게 전가할 수 있음

〈그림 5〉 상품별 공동재보험 사례



9) 금융재보험의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정의하는 공동재보험의 형태는 아님

-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원보험사는 출재한 보험부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하며, 재보험사는 원보험사보다 높은 자산운영 성과가 가능하고 요구자본 부담도 낮다고 판단하여 공동재보험을 인수함

4. 향후 과제



- 공동재보험 도입은 직접적인 자본관리에서 부채조정방식으로 자본관리수단이 확대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, 다른 방식의 부채조정방안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 - 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인해 공동재보험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의견도 있으나, 다른 자본관리방안과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확대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
 - 또한 공동재보험은 재보험사와 계약을 하므로 다수의 시장참여자가 필요한 다른 자본관리방안에 비해 신속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
 - 향후 계약 이전, 계약재매입 등의 부채조정방안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- 공동재보험은 비례재보험 방식만 허용되었으나 향후에는 다양한 방식이 허용될 필요가 있으며, 추가적인 제도 개선으로 공동재보험 시장 활성화,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할 것임
 - 해외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‘비비례재보험’ 같은 다양한 형태를 허용하여 금리위험 전가 외에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공동재보험이 활용될 필요가 있음
 - 추가적인 제도 개선으로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재보험 지식뿐만 아니라 리스크, 보험계리, 회계,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함 [kiri](#)